

부산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단3405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C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2. 8. 25.

판 결 선 고 2022. 9. 22.

주 문

1.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2021. 6. 11. 접수 제686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 등의 발생

- 1) 원고는 2021. 3. 5. E에게 8,000,000원을 이자율 연 14.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2)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10. 15. 기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은 위 1)항 대출금을 포함하여 원금 11,996,415원, 이자 및 수수료 509,620원, 지연배상금 1105,322원 합계 12,611,357원이 있는 상태였다.

나. 증여계약의 체결 등

- 1) E은 2021. 6. 11.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2)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E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E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금 등 채권이 주문 기재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21. 3. 5. 이미 발생한 이상,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 1) E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인 피고와 주문 기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등 자신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E과 피고의 악의는 모두 추정된다.
-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자신이 E과 혼인하기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여 구입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E과 혼인하기 이전인 1991. 6. 24.부터 사천시 F맨션 제1층 G호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8.

11. 18. H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E이 그와 가까운 시기인 2008.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고와 E은 이혼한 상태였고 2014. 12. 17.에야 다시 혼인하였던 점, 피고가 사천시 F맨션 제1층 G호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이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결론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6. 11.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1. 6. 11. 접수 제686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우경아

별지

부동산 목록

1. 토지의 표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목 : 대

면적 : 548.7m²

2.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11층 호84.95m²

철근콘크리트조

3.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54870 분의 1167

